

2025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장학생 추천 안내사항(학부)

1. 신청 자격(공통)

-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.00이상(4.30만점)인 자
*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

2. 추진일정

- 학생신청기간: 2025. 11. 11.(화) ~ 11. 17.(월) * 각 대학 상황에 맞게 신청기간 자율적으로 운영가능
- 대학추천심사: 2025. 11. 18.(화) ~ 11. 28.(금)
* 참고: 학부 국가장학금 3차 지급 내역은 11. 20.(목)까지 반영 예정(등록금 초과 여부 확인용)
- 대학추천회신: 2025. 11. 28.(금) 까지

3. 추천 가능 장학금 조회

- 유레카통합행정 > 대학 > 장학 > 교내장학금관리 > 기탁장학금조회

4. 추천 방법

가. 유레카 메뉴

- 대학 > 장학 > 교내장학금관리 > 교내장학금신청자추천관리

나. 입력/명단출력 방법

- 2025년도 2학기 > 장학금명 선택 > [조회] 및 [신규] 클릭, 교내장학금 신청자 내역에 신규 입력란 생성 > 추천 대상자의 학번입력 > 장학금액 입력 > 저장 > 추천 체크 > 저장 > 확정
* 학번 입력 시 해당 학생 이번학기 장학금액합과 지급가능 장학금액 확인 가능함
* 확정 후 변경을 원하면 장학복지팀에 '확정 취소'를 요청해야 함
* '기탁장학금조회'에서 조회되는 장학금이 '교내장학금신청자추천관리'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장학복지팀 담당자(2840)에게 문의

다. 장학금 수혜 현황 확인 방법(학과장/전공주임교수)

- 유레카통합행정(교수용) > 보직업무 > 학사 > 장학관리 > 장학금검색(전공주임교수)에서 소속 전공 재학생(전공미정 학부생 포함)의 학년/학기, 등록구분, 등록금액, 학자금대출, 장학금액 등 조회

라. 장학금추천자명단 제출

- 장학금별 장학생 추천 확정 후 추천여부 '추천'으로 조회 후 '장학금추천자명단'을 출력하여 전자 공문으로 제출
* 추가 제출서류 있을 시 공문에 붙임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
5. 유의사항

가.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

- 지급기준에 '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'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,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

할 수 없음

- ‘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’*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함
 - * 등록금 초과 지급을 해야 하는 학생을 ‘교내장학금신청자추천관리’ 메뉴에 입력할 때 반드시 해당 장학금명이 등록금 초과 지급을 할 수 있는 장학금명인지 장학복지팀 담당자(2840)에게 확인 후 입력 요망
 - 등록금 초과 지급 장학금명에는 ‘(수시)’가 명시되어 있음
예) **이화사랑(학부)** 학비감면(등록금 범위 내 지급) / **이화사랑(수시)(학부)** 학업보조비(등록금 초과 지급)
 - 장학생 추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 -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·편입생은 지급 기준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추천 불가함
- 나. 성적 기준, 중복수혜여부,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‘기탁장학금조회’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
- * 지급기준에 ‘중복수혜불가’ 문구가 명시된 경우,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함
 - * 학생별 장학금액은 **10원 단위**까지 지급 가능함
- 다.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,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(가계 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대학에서 보관해야 함)

【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】

구 분	제출서류
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	1) 2025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 2)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5년 1월 ~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

- 라. 추천 장학생에게 감사편지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, *감사편지는 장학금 지급 후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제출(*제출대상자 명단 및 감사편지 제출일정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복지팀에서 각 대학에 별도 안내 예정)

- 마.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

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(이중지원) 방지제도】

-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학비감면)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
 - 학자금 대출: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
 - 장학금(학비감면): 교내, 교외재단, 국가 등 모든 장학금 (‘학비감면’ 장학금: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)
-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,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심사조건	판단	해소방법
장학금+장학금 > 총 등록금	중복지원	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
장학금+대출잔액 > 총 등록금	중복지원 (대출상환대상자)	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